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 ~ 제13조 <기재 생략></p> <p>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① <기재 생략></p> <p>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<u>아무런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u><신설></u></p> <p>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<u><신설></u></p> <p>④ <u>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,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, 이용자의 고의,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분실,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하기로 합니다. <신설></u></p> <p>⑤ <u>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<u>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</u></p> <p><u>2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/u></p> <p><u>3.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u></p> <p><u>4.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</u></p> <p>제15조 ~ 제19조 <기재 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 ~ 제13조 <현행과 동일></p> <p>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<u><삭제></u>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④ <u><삭제></u> <u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,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제8조를 적용합니다.</u></p> <p>⑤ <u><삭제></u></p> <p>제15조 ~ 제19조 <현행과 동일>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 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 <p>- 항목삭제 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 <p>- 항목삭제</p>